

#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29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년 8월 29일
- 라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02일

### 2. 제안이유

- 서면회의 증가에 따라 서면회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에 따라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수당 지급대상 제외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서면회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, 수당의 종류를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 체계를 정비함(안 제4조제1항).
- 나.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수당 지급대상 제외규정을 정비함(안 제4조제2항).

##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」에 맞춰 위원회 위원 수당의 종류, 지급기준, 지급제외 대상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됨.

##### 나. 위원회 현황 및 수당 지급 현황

- 서울특별시(이하 ‘서울시’)는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구하거나,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가 필요가 있을 경우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고 있음.
- 2021년 기준 23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, 위원은 총 5,303명으로 위촉직은 4,566명(86.1%), 내부위원(당연·임명직)<sup>1)</sup>은 737명(13.9%)임.

##### < 위원회 구성 현황 >

(단위 : 명)

합계	위촉직	당연직	임명직
5,303	4,566	556	181

1) 「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」 제6조(위원회의 주민참여)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, 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 이때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.

- 위원은 전문가, 학계, 일반시민, 시민사회단체, 공공기관, 시의원, 민간기업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, 이중 여성 위촉위원은 1,915명(41.9%), 장애인 73명(1.6%), 청년 242명(5.5%)임.

< 위원회 위촉 현황 >

(단위 : 명, %)

합계	전문가	학계	시민 사회 단체	공공 기관	시의원	민간 기업	시민
4,566	1,586 (34.8)	1,214 (26.6)	348 (7.6)	327 (7.2)	280 (6.1)	271 (5.9)	540 (11.8)

- 2021년도 위원회 예산은 33억 1천 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, 위원수당(참석·심사수당) 25억 3천 5백만원(76.5%), 실비(식비, 교통비, 숙박비 등) 1억 7천 9백만원(5.4%), 위원회 관련 사업 경비(토론회·포럼·워크숍 개최)와 회의 운영 6억 3백만원(18.1%)임.

-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기본료(일당 15만원)와 초과수당(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)을 지급함.

<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>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	총액	위원에게 지급되는 비용			회의 운영 비용	
		참석수당	심사수당	교통비 등 실비	사업경비	기타
2019	3,306	1,593	821	19	468	405
2020	3,167	1,496	897	15	575	183
2021	3,317	1,740	795	179	472	131

## 다. 개정안의 세부 내용

### (1) 수당 지급 체계 근거 명확화(안 제4조제1항)

- 안 제4조제1항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를 ‘참석 수당’ 과 ‘심사수당’ 등으로 구분하고,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.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수당)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 한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,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,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의 심사수당</p> <p>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“시의원”이라 한다)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제4조(수당)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 참석수당 :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·의결·협의·자문 등(이하 “심의등”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</p> <p>2. 심사수당 :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</p> <p>3.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</p>

- 현재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, 지급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는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(이하 ‘지방예산 편성기준’)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음.

**【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근거】**

<b>❖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안전부)</b>		
편성목	설정 (통계목 포함)	비고
201 일반운영비	3. 운영수당 가. 위원회 참석수당 1) 법령,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2) 법령,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3) 교통비,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계상 가능 나. 심사수당 - 법령·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) 지방세이의신청심의, 투자심사 등 -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

- 개정안은 ‘지방예산 편성기준’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수당의 종류를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체계를 정비함.

(2) 수당 지급대상 제외(안 제4조제2항)

- 안 제4조제2항은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과 시의원의 수당 지급대상 제외 규정을 새로운 항으로 신설함.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수당) ②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,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제4조(수당)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한 경우. 단,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한 경우까지 포함</li> <li>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'시의원'이라 한다)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·안건 검토·심의한 경우</li> </ol> <p>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,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-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(〔별표3〕)에 따른 집행기준에서는 공무원과 시의원은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지급대상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.

**【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】**

- **공무원 지급제외** :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.
- **시의원 지급제외** :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, 법령·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- 개정안은 하위법령 체계에 맞춰 개정사항을 정비하고, 공무원과 시의원의 위원회 수당 지급 대상 제외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는 입법 조치로 볼 수 있음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용우	02-2180-8062